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배복수 의원 외 6인

2. 개정이유

○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하며,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차기 구성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1/3이상의 요구를 통해 9월·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선거 일자가 6월 7일 이후인 6월 13일임에 따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상충되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관련 일부내용 개정 (안 제4조제1항)

- 현　　행 :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·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.
- 개 정 안 :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(지방선거)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집회한다.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○ 기　　타 : 조례안예고 (2018. 3. 21. ~ 3. 27. 7일간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제44조 및 제45조, 같은 법 시행령 54조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지방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성주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

○ 현행 조례에 따르면,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하며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·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금년 지방 선거일자가 6월 13일로 6월 7일 정례회 일자를 경과함에 따라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9월 1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차기 구성되는 성주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